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정책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사업기간	2025. 3. 1. ~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소재 농지
사업규모	3,261ha(35,666필지)		
사업목적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 관리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례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8,939	147,666	82,130	0	21,686	43,850	48,727	
국비	69,257	92,470	57,491		7,509	27,470	23,213	
도비	0	0					0	
시비	29,682	55,196	24,639		14,177	16,380	25,51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3.850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 경정(91,200원*22명*43.5일) - 기정(91,200원*22명*30.6일) = ·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보조원 인건비 : 경정(91,200원*8명*74.6일) - 기정(91,200원*7명*60일) =	25.986 16.126	
	201-01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구입 : 경정(836,000원*7개소) - 기정(588,000원*7개소) =	1,738	

□ 예산요구 사유

- 농지불법 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전용 여부 조사를 위한 이용실태 조사 보조인력 채용
- 농지정보의 DB자료 및 필지별 농지대장 현행화 연중 추진을 위한 조사 보조인력 채용

□ 예산증감 사유

-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기금 70% : 시비 30%), 농지대장 현행화조사 인건비(기금 50% : 시비 50%), 사무관리비(기금 70% : 시비 30%) 변경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 농지대장 정비계획 수립
 - 2025. 4. ~ 12. : 농지대장 정비 및 현장조사
 - 2025. 7. ~ :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25. 8. ~ :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대상 등록 및 확정
 - 2025. 9. ~ 11. :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등록
 - 2026. 2. ~ 3. :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종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20,104필지)
2024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18,766필지)
2025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사업 추진(19,284필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89,263	81,879	-	7,484	
2024	98,939	93,570	-	5,369	
2025	103,816	19,586	-	84,23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 한현수	담당자	농업8급 김보석	전화	4267
-----	-------	------------	-----	----------	----	------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친환경 수도작 단지 7개소		
사업목적	농업부산물 자원의 재생에너지 활용, 농약화학비료의 투입량 감축, 생산력수익성 확보 등을 위한 토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시스템 구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5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시설설치 자금·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20,267	469,090	473,231	0	0	-4,141	-151,177	
국비							0	
도비	186,080	140,728	141,969			-1,241	-45,352	
시비	434,187	328,362	331,262			-2,900	-105,82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141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친환경농자재 구입 및 제조작업·드론살포비 등 : 194.6ha*2,410천원 경정[469,090,000원] - 기정[473,231,000원]	-4,141	

□ 예산요구 사유

- 사업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 친환경 수도작 단지에 친환경농자재 구입 비용 및 신규 친환경 인증 필지에 대한 소득보전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친환경 사업량 면적(206ha → 194.6ha) 감소로 예산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사업계획 수립
 - 2025. 1. ~ 2. : 사업신청 및 사업량 확정
 - 2025. 3. ~ 12. :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 2025. 12. : 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단지 : 6개소(도사골친환경단지, 문수산친환경작목회, 승마산친환경단지, 우리뜰영농회, 제일영농, 조강친환경단지) - 집행금액 : 625,184천원
2024	- 지원단지 : 6개소(도사골친환경단지, 문수산친환경작목회, 승마산친환경단지, 우리뜰영농회, 제일영농, 조강친환경단지) - 집행금액 : 617,569천원
2025	- 지원단지 : 7개소(도사골친환경단지, 문수산친환경작목회, 승마산친환경단지, 우리뜰영농회, 제일영농, 조강친환경단지, 농촌지도자영농조합법인) - 집행금액 : 459,054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25,526	625,184	-	342	
2024	620,267	617,569	-	2,698	
2025	473,231	459,054	-	14,17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77ha		
사업목적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경작 유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3,033	113,947	123,033	0	0	-9,086	-9,086	
국비							0	
도비	24,607	34,184	24,607			9,577	9,577	
시비	98,426	79,763	98,426			-18,663	-18,66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86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301-14 기타보상금	· 사업내용 : 사업신청일 ~ 2025. 10. 31.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필지에 장려금 지급 · 사 업 량 : 177ha · 품목별 지급 단가 - 곡류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 채소·과채·특작류·기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 과실류 : 유기 1,500천원/ha, 무농약 1,380/ha * 품목, 재배 면적 등에 따라 농가별 보조금 상이 경정[113,947,000원]-기정[123,033,000원]	= -9,086	

□ 예산요구 사유

-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유지와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장려금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부담비율 변경(20%→30%)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 : 사업지침 설명 및 홍보
 - 2025. 3. ~ 4. : 사업신청
 - 2025. 5. ~ 11. : 이행점검
 - 2025. 12.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농가수 : 124농가 ·지급면적 : 134.4ha ·지급금액 : 74,791천원
2024	·농가수 : 138농가 ·지급면적 : 175.6ha ·지급금액 : 93,394천원
2025	·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6,075	74,791	-	21,284	
2024	123,033	93,394	-	29,639	
2025	123,033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선택형맞춤농정(전환사업)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농지
사업규모	3개소		
사업목적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의 기반확충 및 현대화를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1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력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65,000	1,567,781	1,270,000	0	175,967	121,814	1,102,781	
국비		0					0	
도비	93,000	470,334	381,000		52,790	36,544	377,334	
시비	372,000	1,097,447	889,000		123,177	85,270	725,447	
기타	465,000	1,567,781	1,270,000		175,967	121,814	1,102,781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1,814	
선택형 맞춤농정 (전환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선택형맞춤농정사업 : 경정{(1,445,967천원*2개소*50%)+(243,628천원*1개소*50%)} -기정(1,445,967천원*2개소*50%)	= 121,814	

□ 예산요구 사유

-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량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사업규모(2개소→3개소) 증가 및 경기도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25.02.~2025.11. : 사업추진
 - 2025.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김포시배연구회) · 집행액 : 360,000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배 생산시설 및 장비 등 지원
2024	· 사업량 : 3개소(김포파주인삼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김포시사과연구회) · 집행액 : 465,000천원 · 내 용 : 인삼생산시설,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사과생산시설 지원
2025	· 사업량 : 2개소(신김포농협, 김포시포도연구회) · 집행액 : 383,467천원 · 내 용 : 농산물 공동육묘장 및 포도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0,000	360,000	-	-	
2024	465,000	465,000	-	-	
2025	1,445,967	383,467	-	1,062,5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농업6급 손동임	전화	4277
-----	-------	------------	-----	----------	----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관내 농경지
사업규모	2,894톤		
사업목적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비료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 훼손, 성분 저하 및 포장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9,390	144,675	0	0	0	144,675	15,285	
국비	77,634	86,805				86,805	9,171	
도비	15,527	17,361				17,361	1,834	
시비	36,229	40,509				40,509	4,28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4,675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2,894톤*100,000원*50%	= 144,675	

□ 예산요구 사유

- 사업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50% 지원을 통해 무기질비료 원자재 확보 및 비료 수급안정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전년대비 톤수(1,144톤 → 2,894톤)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 : 무기질비료 지원계획 안내 및 확정내시
 - 2025. 1. ~ 12. : 사업추진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가수 : 6,250호 - 지원규모 : 2,502톤 - 지원금액 : 332,244천원
2024	- 농가수 : 5,919농가 - 지원규모 : 2,105톤 - 지원금액 : 106,562천원
2025	-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54,165	332,244	-	221,921	
2024	129,390	106,562	-	22,828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농업지원팀장 조기영	담당자	행정7급 서상훈	전화	4278
-----	-------	------------	-----	----------	----	------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GAP 안전성 분석 144점 / 검사 50건		
사업목적	GAP 안전성 분석지원으로 농수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제3호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 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또는 우수관리인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0,668	27,600	46,000	0	0	-18,400	-3,068	
국비	15,334	13,800	23,000	0	0	-9,200	-1,534	
도비	0	0	0	0	0	0	0	
시비	15,334	13,800	23,000	0	0	-9,200	-1,534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400	
GAP 안정성 분석지원	207-01 연구용역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경정(17,600,000원) - 기정(36,000,000원)	= -18,400	

□ 예산요구 사유

-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및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의 증가로 GAP 신규 인증 농가 확대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증대

□ 예산증감 사유

- 용역 계약 낙찰차액 90% 적용에 따른 용역비 감액
- 사업량(288ha → 163ha)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3. : 사업계획 수립
 - 2025. 06. :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 2025. 11. : 용역 준공
 - 2025. 12.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56점 · GAP 인증농가 토양·용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급 : 9개소
2024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79점 · GAP 인증농가 토양·용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급 : 24개소
2025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76점 · GAP 인증농가 토양·용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급 : 5개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906	11,278	-	8,628	
2024	30,668	23,222	-	7,446	
2025	46,000	1,498	-	44,50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전화	4284
-----	-------	----------	-----	----------	----	------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관내 어린이집 292개소, 유치원 29개소		
사업목적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안정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35,454	239,000	132,060	0	0	106,940	3,546	
국비	0	0	0	0	0	0	0	
도비	117,727	119,500	66,030	0	0	53,470	1,773	
시비	117,727	119,500	66,030	0	0	53,470	1,773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6,940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어린이집 공공급식 지원 : 경정(175,114천원)-기정(79,466천원) = · 유치원 공공급식 지원 : 경정(63,286천원)-기정(51,994천원) =	95,648 11,292	

□ 예산요구 사유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친환경 등 우수 경기미(김포쌀) 구입 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액 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의 소량 소비·구매 특성에 따른 유통비용 문제 해소 및 안전한 먹길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사업계획 수립, 공급자협의회 가격결정
 - 2025. 03. : 사업추진
 - 2025. 12. ; 월별 공급량 확인 및 월별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72개소 9,899명, 유치원 31개소 5,194명 · 지원내역 : 무농약 129톤, GAP 43톤
2024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92개소 10,290명, 유치원 52개소 8,879명 · 지원내역 : 무농약 194톤
2025	· 지원대상 : 어린이집 292개소 10,290명, 유치원 52개소 8,879명 · 지원내역 : 무농약 84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1,748	177,529	-	84,219	
2024	235,454	235,398	-	56	
2025	132,060	117,244	-	14,81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공공급식센터팀 양성지	담당자	농업9급 박민경 해양수산8급 박주희	전화	4284 4290
-----	-------	-------------------------	-----	------------------------	----	--------------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농업회사법인 2개소		
사업목적	산지의 농산물 출하시 팻릿,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 제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9,139	0	0	0	29,139	29,139	
국비		9,713				9,713	9,713	
도비		9,713				9,713	9,713	
시비		9,713				9,713	9,713	
기타		67,991				67,991	67,991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9,139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물류기기 임차비용 지원(2개소) : 29,139,000원	= 29,139	

□ 예산요구 사유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팻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식품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부터 지자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 예산증감 사유

- '25년 신규로 보조금 확정 내시되어 예산 증액됨[경기도 농식품유통과-3540(25.3.14.)]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예산확보
 - 2025. 10 : 사업추진
 - 2025. 12. : 정산
 - 2026. 01. : 실적 보고 및 성과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유통팀장 오재일	담당자	농업8급 김수연	전화	4283
-----	-------	----------	-----	----------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금포로 1697
사업규모	공공급식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목적	공공급식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안정적인 공공급식 실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학교급식법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조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식생활교육, 전통 음식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1항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5,645	69,980	33,860	33,860	0	2,260	-5,665	
국비		0	-	-	-		0	
도비		0	-	-	-		0	
시비	75,645	69,980	33,860	33,860	-	2,260	-5,665	
기타		0	-	-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60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65,000원*4개월 소방안전관리대행: 250,000원*4개월 엘리베이터안전관리대행: 145,000원*4개월	= 660 1,000 580	
	201-02 공공운영비	엘리베이터 무선통신비: 5,000원*4개월	= 20	

□ 예산증감 사유

- 효율적인 공공급식센터 유지관리 업무를 위하여 농업진흥과 치유센터팀의 건물 유지 관리 업무를 현재 상주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팀이 한시적으로 대행
 - ※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 농업진흥과가 공공급식센터에 상주시 업무 및 예산 재이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2. : 학교급식물류 지원센터 착공
 - 2024. 10. :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 2025. 1. ~ 12. : 공공급식센터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
 - 2026. 상반기 : 시범운영
 - ※ 2026. 6 : 그린케어센터 운영(농업진흥과 치유센터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2회
2024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1회 ○ 공공급식센터팀 사무실 이전 공사
2025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 1회 ○ 공공급식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80	4,908	-	2,372	
2024	75,645	69,312	-	6,333	
2025	67,720	30,855	-	36,86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정책과	공공급식센터팀장 양성지	담당자	해양수산8급 박원표	전화	4289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축산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264농가		
사업목적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 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2,500	170,624	370,623	0	1	-200,000	88,124	
국비	0	0	0	0	0	0	0	
도비	16,500	51,187	111,187	0	0	-60,000	34,687	
시비	66,000	119,437	259,436	0	1	-140,000	53,437	
기타	55,000	113,749	247,082	0	0	-133,333	58,749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보험료 : 경정(646,269원 * 264개소 ≍ 170,624,000원) -기정(646,269원 * 476개소 ≍ 370,624,000원)	= -200,000	

□ 예산요구 사유

○ 자연재해 및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조기 안정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도 사업량 과다 내시로 인한 초과 수요량 반납
 - 사업량 감축 : 476개소 → 264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4. : 사업 안내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1,874,531두(수) - 집행액 : 64,629천원
2024	- 사업량 : 1,049,190두(수) - 집행액 : 82,314천원
2025	- 사업량 : 2,424,722두(수) - 집행액 : 129,09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4,705	64,629	-	76	
2024	82,500	82,314	-	186	
2025	370,624	129,090	-	241,53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한우농가
사업규모	미경산우 35두		
사업목적	한우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로 민간의 자율 표시를 유도하고 비육용(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고기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한우농가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200	2,800	2,100	0	0	700	-4,400	
국비	3,600	1,400	1,050	0	0	350	-2,200	
도비	0	0	0	0	0	0	0	
시비	3,600	1,400	1,050	0	0	350	-2,200	
기타	4,800	1,870	1,400	0	0	470	-2,93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 : 경정(80,000원*35두)-기정(60,000원*35두) =	700	

□ 예산요구 사유

- 한우 미경산우 난소 결찰·적출 시술비 지원하여 비육용(고기용) 암소시장 육성 및 미경산우 정보 이력 관리 정착 유도

□ 예산증감 사유

- 지원한도 변경(6만원 → 8만원)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추진계획 수립
 - 2025.07.~2025.11.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난소 결찰·적출 시술
 - 2025.12.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사업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7,200	-	-	7,200	
2025	2,100	-	-	2,1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축산환경 개선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수분조절제 3,440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14,794kg		
사업목적	축산농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70,000	442,930	362,500	60,000	0	20,430	172,93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54,000	132,879	108,750	18,000	0	6,129	78,879	
시비	216,000	310,051	253,750	42,000	0	14,301	94,051	
기타	270,000	442,930	362,500	60,000	0	20,430	172,93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430	
축산환경 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분조절제: 경정 (150,000 * 3,440톤 * 50% = 258,000,000원) -기정 (150,000 * 3,470톤 * 50% = 260,250,000원) · 미생물제: 경정 (25,000원 * 14,794kg * 50% = 184,930,000원) -기정 (25,000원 * 12,980kg * 50% = 162,250,000원)	= 20,430	

□ 예산요구 사유

- 축산시설 분뇨 악취 제거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민원 해소에 기여

□ 예산증감 사유

- 미생물 수요량 대비 예산 부족에 대해 도 추가 내시
 - 미생물제 사업량 증가 : 12,980kg → 14,794kg (6,794kg 증)
 - 톱밥 (자연순환농업센터) 사업량 감소 : 800톤 → 770톤 (30톤 감)
 - 톱밥 (축산농가) 사업량 : 2,670톤 (변동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4. : 사업 안내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수분조절제 1,700톤, 악취저감미생물제(탈취제) 30,000kg - 집행액 : 208,766천원
2024	- 사업량 : 수분조절제 3,400톤, 악취저감미생물제(탈취제) 8,000kg - 집행액 : 270,000천원
2025	- 사업량 : 수분조절제 3,101톤, 악취저감미생물제(탈취제) 6,434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0,000	208,766	-	1,234	
2024	270,000	270,000	-	-	
2025	422,500	411,790	-	10,71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축산농가 악취·분뇨 문제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분뇨 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으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제3호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20,000	305,000	310,000	0	70,000	-75,000	85,00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44,000	91,500	93,000	0	21,000	-22,500	47,500	
시비	176,000	213,500	217,000	0	49,000	-52,500	37,500	
기타	220,000	305,000	310,000	0	70,000	-75,000	85,000	자부담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5,000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 경정(30,000,000원*1개소*50%)-기정(30,000,000원*6개소*50%) =	-75,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환경법규 준수 및 악취민원 해소
- 가축분뇨 처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력 문제 해소 및 분뇨처리 부담 경감

□ 예산증감 사유

- 일부품목(다용도 축분처리장비)의 사업량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 감액 : 6개소 → 1개소 (5개소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03. :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 2025.03.~2025.04. :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콤포스트(65t) 1개소 - 스키드 로더 4개소
2024	- 콤포스트(65t) 2개소 - 동풍식 퇴비사 개선 1개소 - 장착형 퇴비 교반기 4개소
2025	사업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0,000	145,000	-	25,000	
2024	220,000	180,000	-	40,000	
2025	380,000	-	-	380,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7급 고나영	전화	4303
-----	-----	----------	-----	----------	----	------

축사이미지 개선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0개소(사업 일몰)		
사업목적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친환경 축산업 구축으로 지속발전 가능 산업으로 육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00	0	30,000	0	0	-30,000	-10,00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2,000	0	9,000	0	0	-9,000	-2,000	
시비	8,000	0	21,000	0	0	-21,000	-8,000	
기타	10,000	0	30,000	0	0	-30,000	-10,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	
축사이미지 개선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축사이미지 개선 : 경정(0원) - 기정(20,000,000원 * 3개소 * 50% = 30,000,000원)	= -30,000	

□ 예산요구 사유

○ 아름다운농장(축사 조경, 안내판 제작 등)으로 축산업 이미지 개선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예산증감 사유

○ 사업 수요 부족 및 포기량 발생으로 사업비 반납

- 사업량 감축 : 3개소 → 0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4.~2025.03.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축산농가 1개소 - 집행액 : 10,000천원
2024	- 사업량 : 축산농가 1개소 - 집행액 : 10,000천원
2025	- 반납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000	10,000	-	-	
2024	10,000	10,000	-	-	
2025	30,000	-		30,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축산농가, 단체
사업규모	사일리지 2,000톤		
사업목적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한 가축사양으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1,000	114,084	150,021	1	0	-35,938	33,084	
국비	27,000	38,028	50,007	0	0	-11,979	11,028	
도비	0	15,211	0	20,003	0	-4,792	15,211	
시비	54,000	60,845	100,014	-20,002	0	-19,167	6,845	
기타	9,000	12,676	16,669	0	0	-3,993	3,67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5,938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조운송비 : 경정 (63,380원 * 2,000톤 * 90% ≒ 114,084,000원) - 기정 (63,380원 * 2,630톤 * 90% ≒ 150,022,000원)	= -35,938	

□ 예산요구 사유

- 국내산 조사료 공급량 확대를 통한 수입 조사료 감소로 축산농가 경영개선

□ 예산증감 사유

- 도 사업량 과다 내시로 인한 수요 초과 교부액 반납
- 사업량 감축 : 2,630톤 → 2,000톤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4.~2025.04. :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선정
 - 2025.04.~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사업량 : 1,091톤 - 집행액 : 62,550천원
2024	- 사업량 : 893톤 - 집행액 : 51,840천원
2025	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6,726	62,550	-	94,176	
2024	81,000	51,840	-	23,160	
2025	150,022			150,02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양봉농가
사업규모	0봉군(사업 일몰)		
사업목적	양봉농가의 응애, 질병 피해 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수여왕벌 및 우수봉군 보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400	0	8,400	0	0	-8,400	-8,400	
국비	4,200	0	4,200	0	0	-4,200	-4,200	
도비	0	0	0	0	0	0	0	
시비	4,200	0	4,200	0	0	-4,200	-4,200	
기타	5,600	0	5,600	0	0	-5,600	-5,6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400	
우수여왕벌 보급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우수여왕벌 및 우수봉군 구매비용 : 경정(0원)-기정(200,000원*70봉군*60%) =	-8,400	

□ 예산요구 사유

- 질병으로부터 꿀벌 폐사의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수여왕벌 및 우수봉군 보급

□ 예산증감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사업 일몰 결정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일몰 사업으로 추진 현황 및 계획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60봉군(7,200천원, 3개 농가) 지원
2025	- 사업 일몰로 인한 전액 감액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400	7,200	-	1,200	
2025	8,400	-	-	8,4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학생승마체험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유소년 전문 인증 승마장	
사업규모		390명				
사업목적		청소년의 심신수양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승마체험 지원으로 자긍심 부여 및 건강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말산업 육성법			제4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2,560	87,360	60,480	0	0	26,880	44,800	
국비	18,240	37,440	25,920	0	0	11,520	19,200	
도비	0	0	0	0	0	0	0	
시비	24,320	49,920	34,560	0	0	15,360	25,600	
기타	18,240	37,440	25,920	0	0	11,520	19,2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880	
학생승마체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승마체험비 및 보험료 : 경정(320,000원*390명*70%)-기정(320,000원*270명*70%) =	26,880	

□ 예산요구 사유

- 청소년의 심신수양과 체력향상 등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승마인 저변 확대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량 증가(270명 → 390명)로 인한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2025. 03. : 사업 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 2025. 03. ~ 2025. 12. : 학생승마 대상자 선발 및 승마체험 실시
 - 2025. 1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학생승마체험 200명 추진
2024	학생승마체험 190명 추진
2025	학생승마체험 270명 사업추진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4,800	42,392	-	2,408	
2024	42,560	41,692	-	868	
2025	60,480	-	-	60,48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사업기간	2025. 5.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젖소 160두, 산란계 293,450두, 분뇨처리개선(한우 973.7톤, 젖소 1088.8톤)		
사업목적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05	69,589	0	0	0	69,589	68,684	
국비	905	69,589	0	0	0	69,589	68,684	
도비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9,589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축산)	301-14 기타보상금	. 저메탄사료(젖소): 50,000원*160두 . 질소저감사료(산란계) : 200원*293,450두 . 기계교반.강제송풍(한우) : 1,300원*973.7톤 . 기계교반.강제송풍(젖소) : 1,500원*1,088.8톤	= 8,000 = 58,690 = 1,266 = 1,633	

□ 예산요구 사유

- 축산부문 저탄소 기반 실현을 위한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및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가내시 및 2025. 5월 사업 공고에 따른 사업 신청량(10개소)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2. ~ 2025. 03. : 저탄소 프로그램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 2025. 05. : 사업대상자 선정
 - 2025. 05. ~ 2025. 10. : 활동 이행 및 점검
 - 2025. 11. ~ 2025. 12. : 지급액 산정 및 지급
 - 2025. 12. : 사업완료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사업 추진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905	-	905	905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FTA 피해보전직불금(축산분야)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89농가, 1,948마리		
사업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 및 피해 보전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02,412	0	93,835	0	8,577	102,412	
국비	0	102,412	0	93,835	0	8,577	102,412	
도비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577	
FTA 피해보전 직불금 (축산분야)	301-14 기타보상금	· 한우 : 경정(53,119원*1,702마리)-기정(53,119원*1,572마리) = · 송아지 : 경정(104,450원*89마리)-기정(104,450원*73마리) =	6,906 1,671	

□ 예산요구 사유

- FTA 체결로 인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 도모 및 피해 보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추가 지급을 위한 국비 내시 추가 반영
(2개 농가, 한우 130마리, 송아지 16마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 : 1차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
 - 2025.09. : 2차 지급 지급결정서 통보
 - 2025.10. : 2차 지급 추진
 - 2025.12. : 최종 지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87농가, 1,802마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93,835	93,835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행정7급 고나영	전화	4303
-----	-----	----------	-----	----------	----	------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승마장
사업규모		0명(사업 일몰)		
사업목적		말산업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대상 실무연수 기회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말산업 육성법		제4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0	21,000	0	0	-21,000	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0	0	10,500	0	0	-10,500	0	
시비	0	0	10,500	0	0	-10,500	0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인턴 인건비 : 경정(0원)-기정(2,100,000원*1명*10개월)	= -21,000	

□ 예산요구 사유

- 성공적인 말산업 종사자 정착을 위한 동기 부여와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른 전액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일몰 사업으로 추진 현황 및 계획 없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1,000	-	-	21,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8급 김효건	전화	4304
-----	-----	----------	-----	----------	----	------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사업기간	2025. 8.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신규) 1농가		
사업목적	축산데이터에 기반한 사양관리 최적화 등에 필요한 스마트장비 연계 솔루션 시스템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축산법	제3조제1항, 제2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공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9,000	0	0	0	9,000	9,000	
국비	0	9,000	0	0	0	9,000	9,000	
도비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기타	0	21,000	0	0	0	21,000	21,00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패키지 모델(4번) 30,000,000원*1개소*30% 자동급이기 : 15,000,000 * 1식 환풍기 : 6,000,000 * 1식 윈치커튼 자동조절기 : 3,000,000 * 1식 데이터 관리 솔루션 : 6,000,000 * 1패키지	= 9,000	

□ 예산요구 사유

- 약취 및 사양관리 개선 등 축산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축산 장비 패키지 솔루션 모델 도입

□ 예산증감 사유

- '24.11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 및 사업비(국비100%) 내시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8. : 3회 추경 편성, 사업계획서 검토
 - 2025.09.~2025.11. : 사업 추진
 - 2025.11.~2025.12. : 실적 보고, 정산검사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음
2024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음
2025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폭염대비 축산농가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5. 7. 25. ~ 2025. 9. 30.	사업위치	관내 축산농가
사업규모		면역증강제 5,201kg, 열차단포 4,767장		
사업목적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증체율 등의 생산성 저하 피해를 막고자 긴급 예방 물품 지원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항 제6호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80,000	0	0	0	80,000	80,00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0	80,000	0	0	0	80,000	80,000	
시비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0	
폭염대비 축산농가 지원	206-01 재료비	. 면역증강제-육계, 메추리 (비고솔) 140,756원 x 67통 =	9,431	
		. 면역증강제-한우 (비테인 시그니처) 16,086원 x 2,030포 =	32,655	
		. 면역증강제-돼지 (카스피린-c) 10,949원 x 2,836포 =	31,051	
		. 면역증강제-양봉 (지키리 개포) 1,440원 x 4,767장 =	6,863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폭염이 유례없이 길고 강도 높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폭염 예방 물품을 공급하여 가축 폐사 등의 폭염 피해 최소화

□ 예산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도비100%) 교부에 따른 신규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7.~2025.08. :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른 폭염대비 긴급 물품 구입 배부
 - 2025.09 : 집행 결과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음
2024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음
2025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80,000	73,136	-	6,86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축산팀장 박용준	담당자	농업6급 박정미	전화	4302
-----	-----	----------	-----	----------	----	------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소 사육농가
사업규모	1,000두		
사업목적	거래 소 검사 채혈비를 채혈요원(김포시 공수의사)에 지급하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사전탐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8,800	15,000	30,000	0	-24,750	9,750	-13,800	
국비	8,640	4,500	9,000	0	-7,425	2,925	-4,140	
도비	3,024	0	0	0	0	0	-3,024	
시비	17,136	10,500	21,000	0	-17,325	6,825	-6,636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750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지원	301-14 기타보상금	·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지원 : 경정(15,000원*1,000두)-기정(15,000원*350두) =	9,750	

□ 예산요구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의 결핵 및 브루셀라 채혈검사 조정으로 인한 사업물량 증가

□ 예산증감 사유

- (기존) 농림축산방역지원본부에서 결핵/브루셀라 도축 및 거래 소 채혈
(변경) 농림축산방역지원본부에서 도축 소 검사 채혈(브루셀라)
김포시 공수의사가 거래 소 검사 채혈(브루셀라 및 결핵)
- 검사물량 증가 예상되어 증액 내시(350두분 → 1,000두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기본계획 수립
 - 2025.01.~2025.12. :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채혈 검사 실시
 - 2025.12. : 결과 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일제검진 채혈 1,900두
2024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일제검진 채혈 1,816두
2025	소 예찰/거래 목적 채혈 실시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	28,775	-	1,225	
2024	28,800	27,115	-	1,685	
2025	5,250	-	-	5,25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사육농가
사업규모	우제류 전축종(소,돼지,염소,사슴) 86,260두		
사업목적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0,296	115,038	78,077	24,361	0	12,600	34,742	
국비	56,260	61,006	54,706	0	0	6,300	4,746	
도비	4,807	10,806	0	9,546	0	1,260	5,999	
시비	19,229	43,226	23,371	14,815	0	5,040	23,997	
기타	55,208	41,942	60,904	-24,362	0	5,400	-13,26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600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경정(97,865,000원)-기정(85,265,000원)	= 12,600	

□ 예산요구 사유

-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축종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

□ 예산증감 사유

- 3~4월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 관련 양돈농가 일제 보강접종 등으로 백신 추가수요 발생
(접종지원량 : 76,260두 → 86,260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기본계획 수립
 - 2025.01~2025.12 :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 4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상반기)
 -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하반기)
 - 2025.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구제역 백신 83,036두분 지원
2024	구제역 백신 80,325두분 지원
2025	구제역 백신 42,451두분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08,508	108,313	-	195	
2024	80,296	80,206	-	90	
2025	102,438	60,495	-	41,94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소규모농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소, 염소 사육농가
사업규모	소, 염소 9,300두		
사업목적	백신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68,947	72,300	51,300	0	0	21,000	3,353	
국비	34,475	36,150	25,650	0	0	10,500	1,675	
도비	5,172	0	0	0	0	0	-5,172	
시비	29,300	36,150	25,650	0	0	10,500	6,850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소규모농가)	301-14 기타보상금	·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 경정(72,300,000원)-기정(51,300,000원) =	21,000	

□ 예산요구 사유

- 수의사를 동원,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을 유지할 통한 질병 발생방지로 축산농가 경제적 피해 예방

□ 예산증감 사유

- 염소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추가수요 발생(2,000두 → 2,600두, 2회 접종 1,200두분)
- 3월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 관련, 일제접종 지침 변경(임신 소 등 접종제외 금지)에 따른 추가수요 발생(1,150두분 증가, 2회 접종 2,300두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기본계획 수립
 - 2025.01~2025.12 :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
 - 4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상반기)
 -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하반기)
 - 2025.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소 구제역 백신 접종기술 지원 3,243두 - 염소 포획 및 접종지원 3,523두 - 구제역 항체검사 채혈 515두
2024	- 소 구제역 백신 접종기술 지원 3,192두 - 염소 포획 및 접종지원 4,233두
2025	- 상반기 염소 포획 및 접종지원 2,577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5,601	56,595	-	11,445	
2024	68,947	62,523	-	6,424	
2025	51,300	28,347	-	22,95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연중 상시 방역 경비 지원			
사업목적	평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비용의지원 등) 제1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2항 또는 제48조의2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 투약, 소독, 역학조사, 이동제한, 살처분, 도태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매몰지의 관리,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 주민 교육·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4,530	167,186	164,530	0	0	2,656	2,656	
국비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시비	164,530	167,186	164,530	0	0	2,656	2,656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56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폐기물 처리 · 혼합 폐기물 처리 : 300,000원/ton * 10ton · 컨테이너 폐기물 처리 : 678,000/개 * 6개 · 폐기물 처리(플라스틱) : 588,000/대 * 1대	= 3,000 = 4,068 = 588	
	201-02 공공운영비	○ 가축방역차량 드론 수리비 : 219,080원*10대*12회	= -5,000	

□ 예산요구 사유

- 가축 방역창고(하성면 원산리 소재)의 폐기물품 정리로 창고 운영 및 효율성 증대
- 가축전염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물품 불출 등 신속 대응

□ 예산증감 사유

○ 김포시 가축방역창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위한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0.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 기본 방역대책 수립
 - 2025.01.~12. : 방역활동(상황실 운영, 방역초소 설치 등)
 - 2025.09. : 김포시 가축방역창고 폐기물 정리
 - 2025.12.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상황실 운영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 3,583천원 - 창고 및 방역차량 유지관리 : 48,800천원 - 방역약품 구입 : 103,110천원 - 가축방역 차량 구입 : 32,643천원
2024	- 상황실 운영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 4,212천원 - 창고 및 방역차량 유지관리 : 41,808천원 - 방역약품 구입 : 109,256천원
2025	- 상황실 운영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 1,458천원 - 방역약품 구입 : 90,830천원 - 창고 및 방역차량 유지관리 : 21,272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98,290	188,136	-	10,154	
2024	164,530	155,276	-	9,254	
2025	164,530	113,560	-	50,97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농업7급 정현욱 농업7급 황예린	전화	4312 4314 4313
-----	-----	------------	-----	----------------------------------	----	----------------------

공중방역수의사 후생복지

사업기간	2025. 1. 1. ~ 2025. 6. 30.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공중방역수의사 1명		
사업목적	김포시 배치 공중방역수의사 근무여건 개선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7호)	8. 보수 및 후생복지
		가. 보수·여비 (5) 기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방역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 다. 거주편의 제공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해당조례	② 시장은 사전 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320	2,000	5,200	0	0	-3,200	-5,320	
국비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시비	7,320	2,000	5,200	0	0	-3,200	-5,320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00	
공중방역 수의사 후생복지	202-01 사무관리비	·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 : 경정(1명*4월*400,000원)-기정(1명*12월*400,000원) =	-3,200	

□ 예산요구 사유

- 공중방역수의사 안정적 장기근무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의무복무 공중방역수의사 근무 3년차로 복무만료 후 준비(학업 등)를 위한 자가(서울) 출·퇴근 희망하여 잔여예산 감액처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추진계획 수립
 - 2025.01~2025.04 : 주거지원비 집행
 - 2025.12 : 집행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중방역수의사 피복비 및 주거지원비 2명 지급
2024	- 공중방역수의사 피복비 및 주거지원비 2명 지급
2025	- 공중방역수의사 상반기 피복비 및 주거지원비(4개월분) 1명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9,400	9,336	-	64	
2024	7,320	6,475	-	845	
2025	5,200	1,799	-	3,401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사업기간		2025. 7. 1. ~ 2025. 12. 31.		사업위치	돼지 ASF 살처분농가
사업규모		1농가			
사업목적		ASF 발생관련 살처분한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으로 소득이 단절된 양돈 축산농가의 최소 생계 유지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생계안정 지원)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974	0	0	0	1,974	1,974	
국비	0	1,382	0	0	0	1,382	1,382	
도비	0	0	0	0	0	0	0	
시비	0	592	0	0	0	592	592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974	
살처분농가 생계안정비용	301-14 기타보상금	· 생계안정자금 지원 : 1,974,000원 × 1농가	= 1,974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8월 ASF 발생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국비 내시 및 교부

□ 예산증감 사유

-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가축소유자(사육자)에 대한 법정 생계유지비용 지원(전국 평균가계비 기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7. : 기본계획 수립
 - 2025. 09. : 생계안정자금 산정 및 사업비 집행
 - 2025. 10. : 결과보고 및 평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신규사업)
2024	- 해당없음(신규사업)
2025	- 해당없음(신규사업)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가축방역팀장 여민구	담당자	수의6급 신문주	전화	4312
-----	-----	------------	-----	----------	----	------

유실·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대		
사업목적	유기동물 포획차량의 유지관리로 유기동물 관련 민원의 효율적 대응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6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 상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위부서를 차량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000	9,023	7,000	0	1,000	1,023	2,023	
국비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시비	7,000	9,023	7,000	0	1,000	1,023	2,023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23	
유실·유기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차량유지관리비 : 경정(9,023,880원*1대)-기정(8,000,000원*1대) =	1,023	

□ 예산요구 사유

-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민원 처리에 필요한 차량 운영
- 유기견 포획반 상해보험료 집행잔액을 유기·유실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전환

□ 예산증감 사유

-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증가
- 하반기(2025년 5월 ~ 2025년 8월) 포획반 확대 운영으로 인한 차량 유류비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진행(연중 계속 사업)
 - 2025.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유기동물 포획차량 운영 및 관리(유류비 및 점검수리비 집행)
2024	유기동물 포획차량 운영 및 관리(유류비 및 점검수리비 집행)
2025	유기동물 포획차량 운영 및 관리(유류비 및 점검수리비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000	7,000	-	-	
2024	7,000	7,000	-	-	
2025	8,000	5,791	-	2,20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유실·유기 동물(야생 들개) 전문 구조 및 포획반 운영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주거지, 들판 등 유실·유기 동물 출몰지
사업규모	2개반, 1식		
사업목적	야산·공원·거주지역 등 인근에 서식하는 유기견(들개)으로부터의 위협·상해 등 각종 피해 민원의 사전예방 및 안전한 반려문화 도시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해당조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① 시장은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2,289	47,945	48,968	0	0	-1,023	25,656	
국비	0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0	
시비	22,289	47,945	48,968	0	0	-1,023	25,656	
기타	0	0	0	0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23	
유실·유기 동물 (야생 들개) 전문 구조 포획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유기견 포획반 상해보험료 : 경정(976,120원)-기정(2,000,000원) =	-1,023	

□ 예산요구 사유

- 유기견 포획반 상해보험료 집행잔액을 유기·유실동물 포획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전환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상해보험 가입비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2025.12. : 사업 진행(연중 계속 사업)
 - 2025.12. : 결과 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김포시 유실·유기 동물 처리 실적: 939마리 유실·유기동물(야생 들개) 포획 실적: 501마리
2025	김포시 유실·유기 동물 처리 실적: 462마리 유실·유기동물(야생 들개) 포획 실적: 303마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2,289	21,492	-	797	
2025	48,968	10,910	-	38,05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축산과	동물위생팀장 신철우	담당자	행정8급 고현종	전화	4322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농업진흥과



농업·농촌 융복합 그린케어센터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양촌읍 금포로 1705-1 일원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건물 안전관리 사항 이행 등 시설 유지관리 및 그린케어센터 운영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
	위임규정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해당조례	김포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 제1항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109	4,520	6,780	0	0	-2,260	2,411	
국비		0	-	-	-		0	
도비		0	-	-	-		0	
시비	2,109	4,520	6,780	-	-	-2,260	2,411	
기타		0	-	-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60	
농업·농촌 융복합 그린케어센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 경정(165,000원*8개월)-기정(165,000원*12개월)	-660	
		소방안전관리대행 : 경정(250,000원*8개월)-기정(250,000원*12개월)	= -1,000	
		엘리베이터안전관리대행 : 경정(145,000원*8개월)-기정(145,000원*12개월)	-580	
	201-02 공공운영비	엘리베이터 무선통신비 : 경정(5,000원*8개월)-기정(5,000원*12개월)	= -20	

□ 예산증감 사유

- 복합건물(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농업·농촌 융복합 그린케어센터) 상주부서 배치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 일원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3. 2. : 농업·농촌 융복합 그린케어센터(학교급식물류 지원센터) 착공
 - 2024. 8. : 건물 준공
 - 2024. 8. ~ 9. :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
 - 2024. 9. ~ : 건물 유지·관리 및 운영 준비
 - 2026. 6. ~ : 그린케어센터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해당없음
2024	·그린케어센터 안전관리 용역비용 지급(소방, 승강기, 보안, 비상전화)
2025	·그린케어센터 안전관리 용역비용 지급(소방, 승강기, 보안, 비상전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109	1,286	-	823	
2025	6,780	4,098	-	2,68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치유농업센터장 조찬휘	담당자	농촌지도사 박지훈	전화	4353
-----	-------	-------------	-----	-----------	----	------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고령농업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16조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0,000	0	50,000	0	0	-50,000	-50,000	
국비		0	-	-	-	-	0	
도비	25,000	0	25,000	-	-	-25,000	-25,000	
시비	25,000	0	25,000	-	-	-25,000	-25,000	
기타		0	-	-	-	-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 경정(0원)-기정(50,000,000원*1개소)	= -50,000	

□ 예산증감 사유

○ 사업대상자(유현2리 마을회) 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포기로 예산감액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 보조사업자 : 성동리 메주간장마을(황승원) · 지 급 액 : 50,000천원 · 지원내역 : 가공장비 4종, 환경개선, 홍보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50,000	50,000	-	-	
2025	50,000	-	-	50,0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농업진흥과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담당자	농촌관광팀장 김지수	전화	4336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술지원과



식량작물 특성화 시험연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월곶면 오리정로 13	
사업규모		1개소				
사업목적		식량작물 실증시험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및 신소득작목 육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촌진흥법			제26조 ①항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00	63,126	30,000	0	20,000	13,126	53,12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	63,126	30,000		20,000	13,126	53,12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126	
식량작물 특성화 시험연구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용 한가득쌀 포장재 제작 : 172원*33,000개 =	5,676	
		· 홍보용 한가득쌀 포장재 동판대: 250,000원*7개 =	1,750	
		· 홍보용 한가득쌀 구입 : 1,900원*3,000개 =	5,700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경기도 및 김포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외래품종 추청벼의 공급 중단('28년부터 공급 중단 예정)에 따라 김포 지역전략 신품종 벼 '한가득'의 홍보용 쌀 제작으로 소비자 홍보 강화 및 금빛나루 인증 김포금쌀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예산증감 사유

- 한가득쌀 포장재 디자인 제작(2회 추경) 완료 후 포장재 제작 및 홍보용 쌀 구입 예산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10. : 홍보용 한가득쌀 포장재 제작 계획수립 및 추진, 유튜브 쇼츠 영상 제작
- 2025. 10 ~ 11. : 홍보용 한가득쌀 구입
- 2025. 10 ~ 12. : 홍보용 한가득쌀 소비자 홍보 및 각종 행사시 홍보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역적응 선발 품종 실증시험(한가득) : 3개소 0.6ha(예찰답, 대곶면 대능리, 월곶면 조강리 등 농가 2개소) ○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실증시험(월곶면 조강리 일원) - 저탄소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 수확량, 미질향상, 도복경감 등 효과 실증 ○ 벼 이모작 실증시험(고촌읍 태리 일원) - 쌀가루 가공용 벼와 밀 이모작 식재로 농가 소득향상 및 적정 작부체계 실증
2024	○ 김포 토종종자 ‘자광미’ 복원 및 활용 - 자광미 순계선발을 위한 채종재배 : 0.1ha, 생산량 300kg/10a(조곡) - 자광미 유효성분 분석(현미, 백미 등) : 안토시아닌,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성분 함유 확인 - 김포문화재단 주최 자광미 소재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추진 : 시민참여 모내기, 추수, 탈곡 수작업 등 ○ 김포 대표 벼 품종 ‘한가득’ 확대 보급 - ‘24년 한가득 재배면적 : 시범사업 2개소 등 40ha - 출수기 중간평가 및 수확 후 식미평가, 농업인의 날 등 한가득 쌀 홍보 및 로컬푸드 판매, ‘25년 종자보급 등
2025	○ 김포 토종종자 ‘자광미’ 확대 및 활용 계획(시장 지시사항) - 김포 토종 벼 “자광미”안정 재배 및 판매·홍보·프로그램 활성화 업무협약(4개 기관·단체간 협약) - 2년차 자광미 종자 복원 및 확대재배 : 1개소 10a(1,000㎡) · 예상생산량 : 조곡 300kg(정곡 200kg) · 활 용 : 종자용 40kg, 시식·홍보·가공실증용 260kg - 자광미 재배 확대 및 소포장 상품화 : 2개소 20a(5,000㎡) · 예상생산량 : 조곡 1,800kg(정곡 1,170kg) · 활 용 : 시식·홍보용 200kg(센터 수매), 소포장 상품화 970kg(자체 판매) - 자광미 소포장 상품화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 시 기 : 6~10월(업체 계약 완료(6. 9.), 9월말 납품 예정) - 자광미 활용 상품화 개발 연구(주류, 식초 등) · 협력기관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 시 기 : 4~9월 · 내 용 : 자광미, 보람찬, 한가득 배합율에 따른 막걸리 적성 연구 · 활 용 : 향후 지역 막걸리 제조업체 또는 체험농장 상품화 연계

	- 소비자 문화예술 활동(김포문화재단 연계) · 프로그램명(안) : ‘밀다리쌀을 키워라! (2탄) · 장소 : 밀다리박물관(월곶 개곡리) 및 박물관 앞 논(1,000㎡) · 대상 : 관내 시민가족(14가족, 42명) · 기간 : 2025. 5. 31. ~ 11. 22.(9회차) · 내용 : 자광미 등 토종벼 재배과정 체험 및 교육, 시식, 평가회 등 - 가공식품 만들기 교육 등 · 대 상 : 한국생활개선회김포시연합회(회장 이정숙 등 25명) · 시 기 : 6~7월, 9회(주1회) · 내 용 : 고추장, 밥도그, 약식, 강정, 요거트, 푸딩, 쿠키, 케익, 포장방법 등 ○ 김포 대표 벼 품종 ‘한가득’ 확대 보급 - ‘25년 한가득 벼 확대 재배 및 생산단지 조성 : 118명 165.2ha ·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 3개사업 3개단지 48명 70ha · 2024년산 한가득 재배희망 농업인 종자 신청 : 70명, 95.2ha - 한가득 종자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 협약기관 : 다자간협약(국립식량과학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8개 기관 및 단체) · 계약물량 : ‘26년도 재배용 10톤(200ha 분량) · 내 용 : 한가득 종자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발전방안 토의 등 - ‘한가득쌀’ 발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한가득 품종 맞춤형 재배법 정립 - 한가득 쌀 브랜드 포장 및 디자인 개발 - 한가득 쌀 홍보 확대
--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5,000	15,000	-	0	
2024	10,000	10,000	-	0	
2025	50,000	22,846	-	27,15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기술지원과	생명작물팀장 정난이	담당자	농촌지도사 정세영	전화	4362
-----	-------	------------	-----	-----------	----	------